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9나2214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결 2020. 10. 13.

판결 선고 2020. 11. 17.

제 1 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소1391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 및 그중 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이 사건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0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도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대법원 2008. 7.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를 확장한 부분은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원고가 명시적으로 부대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므로 부대항소와 관련된 당사자표시나 부대항소취지의 기재는 생략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산시 C 임야 33,52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0. 2. 16. D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2014. 1. 6.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이 내려졌고 2015. 1.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2015. 1.15.)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야 일부에는 피고가 식재한 수량 불상의 엄나무(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가 있다.

1)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임야에 부합되어 원고의 소유가 되었는데, 피고가 무단으로 2018년 봄에는 이 사건 수목으로부터 300kg[나뭇가지 끝에서 나오는 정아(頂芽)만을 채취하였을 경우 약 55.4kg]이 넘는 엄나무 순을 채취하였고 2019년 봄에는 2018년의 3배가 되는 엄나무 순을 채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00만 원[2018년의 손해액

665만 원(정아만을 채취하였을 경우의 손해액은 110만 8,000원)의 일부인 100만 원 및 2019년의 손해액(2018년 손해액의 3배)의 일부인 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256조),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 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이에게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부합되지않는다 할 것이어서, 수목이 식재된 후에 그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지상 수목에 대한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4529, 24536, 24543 판결 참조).

나. 다음 각 사실은 갑 제4, 5, 14호증, 을 제1,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0. 8.경 이 사건 임야 및 인접 임야(위 F, G, H, I, J)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임야의 개발, 엄나무 등 임농산물 재배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한편, D이 작성한 위임장에는 그 위임 범위에 관하여 '임목벌채 허가 신청 취득 후 약초 재배, 엄나무, 율나무, 장뇌삼 등 임농산물 재배에 관한 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임야를 임차하였다.

2) 이 사건 임야 및 인접 임야가 임목수확 설계감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 K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은 2014. 3. 21.부터 2014. 4. 19.까지 이 사건 임야 및 인접 임야에 조림사업으로 상수리, 편백, 엄나무 묘목을 식재하였다. 한편, 위 G 낙찰자가 그 지상에 피고가 식재한 엄나무 묘목을 손괴한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단913, 대전지방법원 2016노2211,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는 "산림조합이 심은 엄나무 묘목 사이에 피고가 엄나무 묘목을 심었다."라고 진술한 반면, 산림조합 담당자는 "산림조합이 엄나무 묘목을 심은 이후 피고가 추가로 묘목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는 2014. 7. 18. 위 경매법원에 L(피고의 아들로서 D과의 임대차 및 약정명의자) 명의로 지상권 및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경매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2014. 7. 18.자 L로부터 지상권 및 유치권 신고 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4.

9. 11. 경매법원에 "위 엄나무는 채무자 겸 소유자(D) 명의로 하되 이를 관리, 경작, 수익하는 권한은 지상권신고인에게 있기 때문에, 2010년경부터 엄나무의 관리 행위를 해오고 있다."라고 기재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4)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D으로부터 위 G를 임차하여 엄나무 묘목을 심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G 지상에 심은 묘목은 위G에 부합되지 않는다(이에 따라 "피고가 위 G 지상에 심은 묘목이 그 토지에 부합되었다"는 취지의 위 G의 낙찰자인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위 G에 부합된 엄나무 묘목(산림조합이 식재한 것)과 구별되는 피해자 소유의 엄나무 묘목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고의로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엄나무를 식재한 시점은 위 G에 엄나무를 식재한 시점과 같은 '산림조합의 조림사업기간(2014. 3. 21.부터 2014. 4. 19.) 무렵 내지 그 직후(늦어도 위 경매법원에 지상권 및 유치권 신고가 이루어진 2014. 7. 18. 이전)'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엄나무를 식재한 무렵에 이 사건 임야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기는 하였으나 이로써 원고와 D 간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도 '피고가 위 G 지상에 심은 묘목은 위 G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된 이상, 이 사건 수목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피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식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임야에 부합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갑 제7 내지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와 D 간에 체결된 약정 중 "식재된 나무는 임대인의 것으로 한다."라는 특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식재한 엄나무는 D의 소유가 되었고, ②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엄나무를 식재한 시점이 경매개시결정일인 2014. 1. 6. 이후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식재한 엄나무의 소유권은 이 사건 임야를 낙찰받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① 주장을 본다.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L 명의)와 D이 체결한 약정 제5항에서 "식재된 나무 및 모든 허가사항은 임대인의 것으로 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부합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민법 제256조는 이른 바 임의규정으로서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한 특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① 위 약정서에는 그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서는 위 3.나.1)항의 위임장의 작성 시점과 같은 2010. 8.경 무렵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당시 이 사건 임야 및 인접 임야에는 소나무와 잡목들이 식재되거나 자라고 있었는데, 이 사건 임야 및 인접 임야에 관한 「임목수확 설계감리 시범사업 대상지 확정 통지」에는 '본 사업은 친환경 벌채를 통한 임목수확으로 산주의 소득을 높이고 향후 경제림 조성을 통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산림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수확하는 임목 매각 소득은 산주에게 지급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는 "위 약정서의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 '위 약정 당시이미 식재된 나무로서 벌채 대상이 되는 것'과 '산림조합이 식재하는 나무로서 그 소유권이 D에게 귀속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가 피고의 비용을 들여 식재하는 수목의 소유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D에게 귀속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바, 피고와 D 간에 체결한 이 사건 임야의 임대차계약이 엄나무 등 임농산물 재배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식재한 엄나무의 소유권이 D에게 귀속된다고 하면 피고는 그가 식재한 엄나무 등 임농산물의 일부인 미분리의 과실(果實)에 대해서도 어떠한 권리가 없게 되어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농산물을 재배·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그 밖에 피고가 비용을 들여식재한 나무의 소유권이 D에게 귀속되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서에 기재된 '식재된 나무'가 '피고가 식재하는 엄나무 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D과 피고 간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라 을 제14, 22,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식재한 엄나무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등 피고가 식재한 엄나무의 소유권이 D이 아닌 피고에게 귀속됨을 거듭하여 확인(D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 및 인접 임야를 개발하도록 하고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기만 하면 되고, 이 사건 임야 및 인접 임야의 개발, 수목 식재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였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D이 체결한 약정중 "식재된 나무 및 모든 허가사항은 임대인의 것으로 한다."라는 부분만으로 이 사건수목의 소유권이 D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 주장을 보건대(이 부분 주장은 피고의 엄나무 식재행위가 민사집행법 제83조, 제92조가 정하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엄나무를 식재한 것은 피고와 D 간에 2010년경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이를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처분금지에 위반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제3자가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피고에게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설령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임야에 부합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2, 10, 11,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수목으로부터 원고 주장 수량의 엄나무 순을 채취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그 주장 액수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거나 원고 주장의 금액을 피고가 부당이득하고 그만큼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정문성, 판사 조우연

1) 원고도 이 사건 임야에 엄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원고가 식재한 엄나무는 가시가 없는 것으로서 피고가 식재한 가시 있는 엄나무와 구분된다.